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가단537421(본소), 2021가단537438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기타(금전)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 주식회사 A

피고(반소원고)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

변 론 종 결 2022. 4. 14.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주위적,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7,759,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23.부터 2022. 5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그중 95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주위적으로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(이하 ‘이 사건 물품’이라 한다)을 인도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할 수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4,936,1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 : 피고는 원고에게 7,877,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2. 23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가. 원고는 2019. 7. 28.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에 위치한 철골조 제관공장 중 D동 일부 200㎡(이하 ‘이 사건 공장’이라 한다)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대에 대하여 월 차임 1,2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 2019. 8. 1.부터 2021. 7. 31.까지, 전기요금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월 전기요금고지서 기재 금액의 1/2씩, 용접가스비용은 E 발행의 매월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의 1/2씩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, 을 제2호증).

나.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에서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용접기 4대 및 현장 작업용 공구 일체 등 이 사건 물품을 매매대금 3,000,000원, 지급기일 ‘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’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, 을 제3호증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 주장

원고는,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,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물품의 인도를 구하고, 예비적으로 만일 이 사건 물품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물품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연체차임 및 전기료 등의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물품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, 그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원고가 이전함에 따라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달리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은 채 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,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연체차임 등 채권과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물품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옳다(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2461 판결 등 참조)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무단으로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앞서 살핀 인정사실 및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별지2 표 중 ‘금액란’ 기재와 같이 차임, 가스비, 전기요금 등이 발생한 사실,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별지2 표 ‘원고 부담금액’란 기재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,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F가 운영하는 ‘G’에 2019. 8. 22. 용접기 수리비 110,000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 외에 ‘G’로부터 2019. 8. 23. 용접봉(198,000원), 2019. 9. 2. 용접봉(79,200원), 2019. 9. 6. 용접봉(48,400원), 2019. 10. 21. 용접봉(396,000원)을 구입하여

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, 가스요금, 전기요금 합계 9,927,728원(= 연체차임 6,216,774원 + 가스요금 1,434,067원 + 전기요금 2,276,887원)을 지급하고,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G에 지급한 대금 합계 831,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,759,328원(= 9,927,728원 + 831,600원)에서 피고가 매매대금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제를 자인하는 3,0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,759,328원(= 10,759,328원 - 3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. 12. 23.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5. 12.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현정

별지1

자 산 목 록							
단위 : 원							
No.	품명	규격	수량	단가	공급가액	부가세액	비고
1		500A (220/380)	1	2,100,000	2,100,000	210,000	
2		500A(220/380)	2	2,150,000	4,300,000	430,000	
3		500A(220/380)	1	2,150,000	2,150,000	215,000	
4		4롤기어 타입(0.	1	1,950,000	1,950,000	195,000	
5		HIL-G351	1	125,000	125,000	12,500	
6		100SN	2	53,000	106,000	10,600	
7		CAS07-6	1	25,000	25,000	2,500	
8		300MM(12")	2	16,000	32,000	3,200	
9		RA-815N	2	75,000	150,000	15,000	
10		RA-820N	1	85,000	85,000	8,500	
11		MGM-1000/1T	1	820,000	820,000	82,000	
12		11SP	10	30,000	300,000	30,000	
13		180A 5M (350A	1	72,000	72,000	7,200	
14		대	2	8,000	16,000	1,600	
15		YGL-315	2	5,000	10,000	1,000	
16		무반동 철손잡이	1	42,000	42,000	4,200	
17		무반동 철손잡이	1	85,000	85,000	8,500	
18		10"(250)	1	13,000	13,000	1,300	
19		12"(300mm)	1	17,500	17,500	1,750	
20		10"(250)	1	10,000	10,000	1,000	
21		12"(300)	1	15,000	15,000	1,500	
22		150MM	2	5,000	10,000	1,000	
23		자동NO.15(대)	1	15,000	15,000	1,500	
24		GSB 18VE-2L II	1	395,000	395,000	39,500	
25		CBX9-1510	1	20,000	20,000	2,000	
26		화이바21be	1	6,500	6,500	650	
27		10WR	2	13,000	26,000	2,600	
28		3990/300	1	30,000	30,000	3,000	
29		75*2M	1	6,600	6,600	660	
30		50*1	1	2,200	2,200	220	
31		10TON150MM	1	125,000	125,000	12,500	
32		THP-1B(30T*100	1	170,000	170,000	17,000	
33		10*6*7.5M(커울	2	8,500	17,000	1,700	
34		자켓마그네트형/	1	13,000	13,000	1,300	
35		고강철용 300*1	4	29,500	118,000	11,800	
36		고강철용 1200*	4	53,000	212,000	21,200	
37		고강철용 450*1	6	35,000	210,000	21,000	
38		고강철용 800*1	6	45,000	270,000	27,000	
39		06"	4	20,000	80,000	8,000	
40		기계버튼방식 3	2	135,000	270,000	27,000	
41		SIF-16FSA	1	70,000	70,000	7,000	
42		2LB	1	6,000	6,000	600	
43		YSMD-1N	1	250,000	250,000	25,000	
44		YSMD-2N	1	330,000	330,000	33,000	
45		PD-13	1	160,000	160,000	16,000	
46		D1023	1	220,000	220,000	22,000	

별지2

사용기간	항목	금액(원)	원고 부담금액(원)	증거
2019. 8.	전기요금	690,760	345,380	을4-1
2019. 9.		954,210	477,105	을4-2
2019. 10.		695,480	347,740	을4-3
2019. 11.		827,120	413,560	을4-4
2019. 12.		1,953,290	693,102 ¹⁾	을4-5
2019. 8.	가스요금	487,300	221,500	을5-1
2019. 9.		754,600	343,000	을5-2
2019. 10.		968,000	440,000	을5-3
2019. 11.		622,600	311,300	을5-4
2019. 12.		333,300	118,267 ²⁾	을5-5
2019. 8.	차임	1,320,000	1,320,000	을2
2019. 9.		1,320,000	1,320,000	
2019. 10.		1,320,000	1,320,000	
2019. 11.		1,320,000	1,320,000	
2019. 12.		936,774	936,774 ³⁾	

1) $1,953,290\text{원} \times 1/2 \times 22/31\text{일}$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.2) $333,300\text{원} \times 1/2 \times 22/31\text{일}$ 3) $1,320,000\text{원} \times 22/31\text{일}$

